**캐피탈콜 약정서**

- 전 문 –

1.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투자자”)는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한화 미국 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호”(이하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자이다. 투자자가 이 약정서 체결일 현재 이 건 투자신탁에 투자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투자자명 | 투자약정액 | 투자지분비율 |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 KRW [•] | 약 [•]% |
| 이 건 투자신탁 | KRW 130,900,000,000 | 100% |

2. 이 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건지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인 Aberdeen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hip LP(“본 건 대상펀드”)에 대출투자를 진행하고, 이를 일정 기간 운용하는 방법으로 이 건 투자신탁을 운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환위험 및 금리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스왑은행”)과 사이에 통화선도계약 및/또는 통화스왑계약 (이하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3.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탁업자”)는 이 건 투자신탁의 자산을 신탁받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보관, 처분, 관리하여야 하는 바, 전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스왑은행 사이에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또는 ISDA Master Agreement 및 Schedule(이하 “기본계약서”)에 근거한 장외파생상품계약 거래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 투자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스왑은행은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한 이 건 투자신탁의 자금부족에 대비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1년 [\*]월 [\*]일 이 약정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자금 부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통지 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이 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이 건 투자신탁(또는 신탁업자)이 장외파생상품계약상의 채무(계약의 해지 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 이 건 투자신탁이 지급하여야 할 최종청산잔액 등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 및 신탁업자에게 해당 사유의 발생경위, 해당 채무액(이하 “자금 부족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위 통지서를 송부하는 동시에 해당 통지서를 스왑은행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또는 스왑은행의 추가 투자 요청)**

제1조의 통지와 동시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아래 제3조에서 정한 추가 투자를 요청(Capital Call)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가 투자를 요청하지 않거나, 추가 투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스왑은행은 투자자에게 직접 추가 투자 요청(Capital Call)을 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자의 이 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 투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스왑은행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투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자금 부족액 중 전문에 명시된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건 투자신탁에 추가로 투자한다.

**제4조 (손해배상)**

투자자는 제3조에서 정한 추가 투자 의무를 미이행 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스왑은행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에게 발생한 손해(변호사 비용, 추가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추가 투자금의 사용 제한)**

1.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제3조에서 정한 투자자의 추가 투자를 포함하여 이 건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포함하여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로부터 추가 투자 받은 이 건 투자신탁의 자금을 장외파생상품계약상 이 건 투자신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양도제한)**

1. 투자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해당 투자지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별첨2 양수도 통지서를 스왑은행에 송부하여 스왑은행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수자가 이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자가 별첨1 양수도 사전동의 기관에 해당하고 이 약정을 체결한 경우 스왑은행은 별첨2 양수도 통지서의 도달만으로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해당 투자지분을 새로운 양수자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양수자가 해당 투자지분에 대해 이 약정서와 동일한 캐피탈콜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른 추가 투자 의무 기타 이 약정서상의 일체의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약정서의 효력)**

1. 기본계약서, 장외파생상품계약 거래확인서 및 이 약정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에 관하여 이 약정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이 약정서는 약관 또는 계약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기존의 투자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스왑은행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의 어떠한 합의 또는 약정에도 우선하며, 그러한 기존의 합의 또는 약정의 내용과 이 약정서의 내용 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기존의 합의 또는 약정은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 약정서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투자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그 상대방을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합의 또는 약정을 이유로 이 약정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할 수 없다.

**제8조 (진술 및 보장)**

투자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스왑은행은 이 약정서 체결일 현재 각자 다음의 각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함을 보증한다.

1.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약정서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 결의, 기타 정관 등 내부 규정상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한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2.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합의한다.

아래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4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투자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대표이사 최 철 웅 (인)

아래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4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대표이사 한 두 희 (인)

아래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4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신탁업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한화 미국 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호의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은행장 권 준 학 (인)

아래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4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스왑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대표이사(은행장) 권 광 석

위 지배인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지원팀 안 진 아 (인)

별첨1.양수도 사전동의 기관

|  |  |
| --- | --- |
| **구 분** | **사전동의 기관** |
| 연기금1)  (54개) |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보훈기금, 복권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영화발전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원자력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해당 연기금이 직접 이 건 투자신탁의 투자자로 참여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동의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공제회  (21개) |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축사공제조합,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행정공제회 |
| 중앙회  (9개)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등 공제사업 포함) |
| 금융관련  공공기관 및 공사(8개) |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금융, 한국투자공사 |
| 보험사  (25개) | 교보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동양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아이비케이연금보험, 케이디비생명보험, 코리안리재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하나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생명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
| 증권사  (20개) |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교보증권, 노무라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
| 여신전문  금융회사  (12개) | 디지비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아이비케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
|  | |

별첨2. 양수도 통지서

**주식회사 우리은행** \_\_\_\_\_\_\_\_\_\_\_\_\_\_\_\_ 센터(지점) **귀중**

당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하는 투자신탁 [투자신탁명](이하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양수도에 따라 이 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21년 [ ]월 [ ]일 체결된 캐피탈콜 약정서(이하 “본 약정”) 전문의 이 건 투자신탁의 투자자 및 투자자가 투자할 내역이 본 통지서에 대한 귀행으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하에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며, 새로운 양수자가 본 약정과 동일한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변경 전

|  |  |  |  |
| --- | --- | --- | --- |
| 투자자명 | 투자금액 | 총 펀드설정액 | 투자비율 |
|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 --- |
| 투자자명 | 투자금액 | 총 펀드설정액 | 투자비율 |
|  |  |  | % |
|  |  |  | % |

[ ]년 [ ]월 [ ]일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대표이사 한 두 희 (인)